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**【 김용석(도봉) 의원 대표발의 】**

의안번호 1631

## I. 조례안 개요

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안 자 : 김용석(도봉) 의원외 25명
- 나. 제 안 일 : 2017. 2. 7.
- 다. 회 부 일 : 2017. 2. 9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·운영 지원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.
- 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 등이 자치구 사무이지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.
-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화장실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를 보조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 제4호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.
- 다. 기타사항 :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나 행사에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상의 불편을 줄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□ 의무 규정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시비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동 개정안에서는 “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있을 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”하라는 내용을 신설한 바,
  - 이는 최근 도심 촛불집회 등에 많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방화장실 등 확대, 긴급의료, 안전요원 배치, 119 비상 대기, 대중교통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, 특히 화장실 이용에 따른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.
- 대규모 행사 등과 관련하여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1)에서는 구청장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<sup>2)</sup>하고 있어, 원인행위자인 주최측이 집회나 행사 참가자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.
  - 그러나 최근 촛불 집회에서 최대 16개동<sup>3)</sup>까지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참가 인원으로 이동화장실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,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.
  - 또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소유자에게 집회나 행사와 관련하여, 시장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도록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시비를 통해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, 이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.

1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(이동화장실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.

2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21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
3) 이동화장실 1개동은 통상 여자화장실 대변기 4칸, 남자화장실 대변기 2칸, 소변기 3칸으로 구성됨.

- 다만,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‘대규모 집회 및 행사’의 개념이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시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.
- 현재 주요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를 중심 광화문부터 시청 주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210개소인 것에 반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총 15개소임.
- 한편,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원금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'16년 기준 약 1,150개소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비 5억원과 구비 4억 5천만원을 합한 총 9억 5천만원으로 개소당 지원받는 금액이 월평균 68,800원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부과 등을 고려할 때, 향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관리운영비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